

실무위원회규정

제정 1999. 7. 8
개정 1999. 7.24
개정 2001.10.15(개폐정리)
개정 2004.12. 9
개정 2006.12. 8(개폐정리)
개정 2009. 4.23
개정 2010. 5.26
개정 2010.10. 7
개정 2011. 6. 9(개폐정리)
개정 2011.12.27
개정 2012. 1.30
개정 2012. 1.31
개정 2012. 4.12
개정 2012. 6.20
개정 2012. 7.10
개정 2012. 9.11
개정 2013. 4.25(개폐정리)
개정 2013. 4.30(개폐정리)
개정 2013. 5.31(개폐정리)
개정 2013. 6.25(개폐정리)
개정 2013. 7.30(개폐정리)
개정 2013. 8.27(개폐정리)
개정 2013. 9.24(개폐정리)
개정 2013.12.26.(개폐정리)
개정 2014. 5.20(개폐정리)
개정 2014. 6.20(개폐정리)
개정 2014. 7.31(개폐정리)
개정 2015. 5. 6(개폐정리)
개정 2015. 5.27(개폐정리)
개정 2015. 6.30(개폐정리)
개정 2015.12.24(개폐정리)
개정 2015.12.29.(개폐정리)

개정 2016. 5.30(개폐정리)

개정 2017.12.22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정관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정관 및 주요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의견수렴 및 검토를 위한 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폐정리 2015. 6.30〉

제2조 (구 성) ①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한국주택협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이내 〈개정 1999.7.24, 2010.10.7〉
3.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이 지명하는 자 1인 이내 〈개정 1999.7.24, 2010.10.7〉
4. 지분을 최상위 금융기간의 장이 지명하는 자 1인 〈개정 1999.7.24, 2010.10.7〉
5. 공사의 토의안건 담당이사, 소관부서장 및 기획조정실장 〈개정 1999.7.24〉
〈개폐정리 2015. 6.30, 2015.12.24〉

6. 법률전문가 (법률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사의 토의안건 담당이사가 된다.〈개폐정리 2015. 6.30〉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성격인 제1항제1호, 제1항제4호내지5호 위원은 소속기관의 해당직위 임기로 한다. 〈신설 2010.10.7〉

④간사는 토의안건 소관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10.10.7〉

제3조 (직 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회의의 준비, 토의사항의 정리 및 회의록의 작성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 (토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위원회 상정에 앞서 토의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사회 상정에 앞서 토의한다.

1. 정관 변경안

2. 보증규정, 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규정, 리모델링자금보증규정, 주택구입자금보증규정, 주택임차자금보증규정, 전세임대주택전세보증금반환보증규정, 기금전세자금대출보증규정,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규정, 용자규정, 보증채무이행규정, 채권관리규정, 미분양주택일시매입사업규정, 미분양투자상품분양보증편입규정, 용자수탁업무취급규정, 주택개량자금용자수탁업무취급규정, 임차료지급보증규정, 후분양대출보증규정, 모기지보증규정, 전세보증금반환보증규정, 공유형모기지수탁업무취급규정, 임대관리보증규정, 단독주택보증규정, 보증한도규정, 공유형모기지보증규정,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규정, 리츠회사채보증규정 및 약관의 제·개정안. 다만, 관계법령 또는 직제규정등의 변경으로 인한 개폐정리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1999.7.24, 2004.12.9, 2009.4.23, 2010.5.26, 2011.12.27, 2012.1.30, 2012.1.31, 2012.4.12, 2012.6.20, 2012.7.10, 2012.9.11, 2013.4.25, 2013.6.25, 2013.7.30, 2013.8.27., 2013.9.24., 2013.12.26., 2014. 5. 20, 2014. 6.20, 2014. 7.31, 2015. 5. 6, 2015. 5.27, 2015.12.29., 2016. 5.30, 2017.12.22><개폐정리 2015. 6.30>

제5조 (회의소집) ①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상정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집한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회 3일전까지 이를 통지한다. <개정 1999.7.2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이 소집하여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위원별로 의견을 서면제출토록 함으로써 위원회소집을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은 개회 1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제출함으로써 출석 및 발언을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토의사항의 처리) 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토론된 내용중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7.24>

②위원회의 의사가 종료된 후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고 사본을 기획조정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획조정

실장은 이를 회차별로 비치·관리한다.〈개폐정리 2015.12.24〉

③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면은 회의록의 일부로 보고 제2항의 회의록에 첨부한다. 〈개정 1999.7.24〉

④소관부서장은 위원회에서 토의된 사항중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안건을 수정하여, 반영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의견을 안건에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

제7조 (위원의 선임등) ①공사에 있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이를 총괄한다.〈개폐정리 2015. 6.30, 2015.12.24〉

②위원의 선임 및 변경시에는 지체없이 당해 기관의 대표자명의로 선임된위원의 인적사항, 사유(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및 선임일자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개폐정리 2015. 6.30〉

③기획조정실장은 제2항의 통지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4조제2호의 대상규정 소관부서장들에게 이를 통지한다. 〈개정 1999.7.24.〉〈개폐정리 2015.12.24〉

제8조 (수당의 지급)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0.15〉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7. 24〉

이 규정은 199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주택사업금융보증규정) 〈2004.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2006. 12. 8>

이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23>

이 규정은 2009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6>

이 규정은 201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7>

이 규정은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9>

이 규정은 201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7>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0>

이 규정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31>

이 규정은 201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12>

이 규정은 201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20>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10〉

이 규정은 201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11〉

이 규정은 2012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25〉

이 규정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30〉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31〉

이 규정은 2013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25〉

이 규정은 201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30〉

이 규정은 2013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27〉

이 규정은 2013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24〉

이 규정은 201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2.26〉

이 규정은 2013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20〉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20〉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31〉

이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6〉

이 규정은 2015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27〉

이 규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30〉

이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4〉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12.29〉

이 규정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30〉

이 규정은 2016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12.22〉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